

2019년도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지원계획 공고(안)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의 활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고도화가 요구되거나 또는 생산차종의 확대 및 신규차종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가 가능한 부품 및 시스템의 개발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15개 내외, 과제당 3.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019. 8월 ~ 2020. 7월 (12개월)

다. 공모방식 : 자유공모

라. 지원대상 분야

- 동력전달, 새시, 제동, 현가, 조향, 차체, 의장 등 기술고도화가 요구되는 자동차부품 및 시스템
- 생산차종 확대 및 신규 차종 개발과 관련한 신규 부품 및 시스템

마. 추진체계

- 전담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평가기관 :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가. 지원 대상

- (주관기관) 전라북도 소재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 (참여기관) 국내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신뢰성 지원기관) 전라북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나. 신청 자격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①호, ②호를 충족하는 기업
 - ①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업
 -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도내 본사(주사무소) 소재 기업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도내 연구기관 및 연구소 입주기업
 -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
 -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단, 기업 단독 추진방식은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기업만 가능
- (참여기관) 국내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공통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신뢰성 지원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이미 개발된 R&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 계획서의 제목,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

<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의 자격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다. 지원내용 및 규모 등

-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동차부품 기술고도화를 위한 R&D 수행 가능 업체 선정·지원
- 지원규모(과제수 및 지원금액)는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확정

구분	지자체 출연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라. 기술료 징수

- 본 사업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출생산 감소에 직면한 도내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추경사업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나. 평가 기준

- 지원 타당성(30점), 사업기획(20점), 수행능력(20점) 및 결과활용(30점) 등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순위 결정
 - *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
 - * 「지원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규평가 항목(안) >

항목	지표	평가내용	배점
지원 타당성 (30)	부합성	○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15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생산·매출 동향 등	15
사업 기획 (20)	구체성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10
	사업비	○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수행 능력 (20)	조직구성	○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전문성	○ 주요 생산 부품 및 보유기술 성숙도	10
결과 활용 (30)	시장부합성	○ 개발성공시 납품가능성 및 시장성	15
	기대효과	○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15
계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라. 지원절차 및 일정

-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전라북도·자동차융합기술원	'19. 6. 28.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업 → 자동차융합기술원	'19. 7. 19. ~ '19. 7. 29.
↓		
현장실태조사 및 신규평가위원회	자동차융합기술원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19. 8월초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자동차융합기술원/전북지역 사업평가단 ↔ 신청기업	~ '19. 8월중
↓		
수행기관 확정	자동차융합기술원	~ '19. 8월중
↓		
협약체결 및 지자체출연금 지급	자동차융합기술원 ↔ 주관기관	~ '19. 8월말

* 온라인 접수기간 : '19. 7. 19.(금) 09:00 ~ 7.29(월) 18:00까지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요령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pms.jiat.re.kr>), 신청서류 제출(방문제출)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 : '19. 7. 19일(금) 9:00 ~ 7.29일(월) 18:00 까지
 - * 본 과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불가능
 -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pms.jiat.re.kr) 참조
 -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 : '19. 7. 19(금) 09:00 ~ 7.30(화) 18:00까지
 -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서류 일체(원본 1부 포함 10부)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jiat.re.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자동차융합기술원 홈페이지(<http://www.jiat.re.kr>) 및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jiat.re.kr>)을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업로드 (회원가입 및 승인 필수)

○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사업계획서	필수	10부(원본 포함)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1)		기관별 1부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기관별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기관별 1부
5	재무·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서식 4-1, 4-2)		기관별 1부
6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서식 5-1, 5-2)		기관별 1부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7)	선택	해당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서식 8)		
9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필수	기관별 1부
10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1부
11	표준재무제표(주관기관·참여기관, 최근 2개년)		기관별 1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온라인 제출
- ※ '필수'항목은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항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
- ※ 온라인 접수 후 신청 서류는 원본 1부 포함 10부를 전담기관으로 제출
(신청서류 제출처 : 전북 군산시 동장산 2길 6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미래기술연구본부)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문의처

- 사업관련 및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자동차융합기술원 미래기술연구본부 (063-472-2352, 2340)

5.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2017년~2018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 (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 (기업에 대한 수행과제 수 제한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다. 기타 유의사항

-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거쳐 총수행기간에 걸쳐 과제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한다.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구입 계획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나. 준용규정

-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
- 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공동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